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7 | 2026. 8. 31. (2026. 8. 24. ~ 2026. 8. 3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방우대 세제 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을 제공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를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

인권·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박지혜의원 등 11인)**」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존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물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 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2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1. <정기국회 개회식> 및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기후노동위>, <예결위> 등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법안 심사 등이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행정안전부) 8
-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1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2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17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18
- 국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21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2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2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23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24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24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25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26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	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28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29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30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31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42인)	3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2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3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33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	3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된 거액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지식재산권] UPC Long-Arm Jurisdiction 판례의 최근 동향 - 확장 일변도에서 “관할권의 존재”와 “행사”를 구별하는 정교화 단계로
-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증명책임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립함과 아울러 API의 성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수소법 시행령 개정
- [금융] 착오매매 정정신청 전에 이루어진 반대매도가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최초의 리딩케이스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8월호
- [건설/부동산] 상가 신축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뒤집고 청구금액의 99%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금전채권신탁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을 인정하여 선금금의 당연충당 및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 [중국] 중국 「생태환경법전」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 Tax Intelligence 8월호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8. 12. - 2026. 8. 25.)
- [건설/부동산]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체결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담보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 - 지방우대 세제 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2026-08-26
--------------	---	-------------------

행정안전부는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음

(1)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주택→주택+오피스텔)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함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200만 원→300만 원)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관계부처 합동)을 적극 추진

(2)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로 차등 설계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공장→산업용 건축물 등)을 확대

(3)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적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사업계획승인일~ 5년 이내)을 신설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70%→100%)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2026-08-25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① (주정유통)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총 판매량의 2%→10%)으로 추가 확대 (국세청)

공정위는 '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 (기후부)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해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함.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③ (기업 회계감사) ①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군(群) 상향]를 도입하고, ②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 (금융위)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 예정임.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소재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④ (환경표지 인증)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하여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 (기후부)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됨. 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였음. 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8 시행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및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8 시행
---------	-------------------	---------------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39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8 시행
---------	---------------	---------------

입장권 등의 압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2139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5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탈퇴한 사업주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8 시행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6-08-27 시행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게 계약거래 농산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 및 법률 제2140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8 시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발기인 및 동의인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8.24. ~2026.09.0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784-5674\)](#)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2026.09.23.
-------	--------------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3, 팩스: 044-204-8969\)](#)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2026.09.23.
-------	----------------	-----------------------------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납세자 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세정 운영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11, 팩스: 044-204-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2026.09.23.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05-3853, 팩스: 044-204-89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28.
~2026.09.14.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대상·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기준 등 (안 제37조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44-202-6468, 팩스: 044-202-603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24.
~2026.09.08.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전화: 044-203-2480, 팩스: 044-203-3466\)](tel:044-203-2480)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28.
~2026.10.07.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전화: 044-201-4007, 팩스: 044-201-5601\)](tel:044-201-400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6-08-25 발의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 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 (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2026-08-26 발의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7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026-08-24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026-08-18 발의

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을 포상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복잡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액 탈세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여 제보·신고의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유용원의원 등 18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를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7조의4제2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2026-08-27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 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및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지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7까지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026-08-27 발의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환경침해의 식별을 통한 침해 예방, 침해 발생시 완전한 회복 지원 등 기업을 둘러싼 인권·환경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이 그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한편, 국제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법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 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수출과 기술이전이 증가하면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당한 수출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균형 있는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수출의 허용범위나 승인기준과 같은 실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9조제3항)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2026-08-27 발의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건조 및 운용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관리, 핵물질의 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전략적 핵심 국책사업임.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대규모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신속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8-26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1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존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훼손·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존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존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6-08-24 발의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2026-08-27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2026-08-24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모사·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업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해열진통제·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등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음

이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026-08-26 발의

AI 전환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과거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2026-08-25 발의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하여 정유·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안 제16조 및 제25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026-08-26 발의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기관·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제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2026-08-26 발의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재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문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전력계통·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08-27 발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도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할 만큼 탄소흡수원으로서 토양의 중요성이 매우 큼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저장에 관한 통계·기술·제도 등을 보완하여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¹과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2026-08-27 발의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충북·강원·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사용되었고 해당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42인)

2026-08-27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테크는 개별 기술의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은 각각의 정책목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투자기관·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테크는 일반적인 신산업에 비하여 실증과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시설·설비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실증기반의 활용, 초기 수요창출, 민간투자 위험분담, 규제혁신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후테크의 범위가 에너지, 탄소, 순환경제, 농식품, 기후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테크 여부와 기후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체계 역시 기업이나 기술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테크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과학적인 최소한의 판별수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관리 및 평가 수행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08-28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해당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폭언 등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등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2026-08-26 발의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임. 특히 수도권권의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용산공원은 100여 년 동안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서 역사적·문화적·환경적 가치가 크므로, 주택공급을 위한 활용은 공원으로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유지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대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가치 보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며, 녹지·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원·주거·기후·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4호나목 및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2026-08-27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21인)

2026-08-28 발의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026-08-28 발의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유아 추락 사고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露臺)에서 발생함에도,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며, 이와 유사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되어,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이에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1(화) 14:00	- 정기국회 개회식 및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8/31(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8/31(월) 14:00	- 긴급 현안질의
	예산결산소위	9/1(화)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9/1(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1소위	9/2(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3(목) 10:00	- 법안 의결
국방위	전체회의	8/31(월) 14:00	- 2025회계연도 결산, 법안 상정 등
문체위	전체회의	9/1(화) 15:00	- 2025회계연도 결산
농해수위	전체회의	8/31(월)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법안 상정, 업무보고 등
		9/1(수)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법안 의결 등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9/1(화)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법안 상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 안심사소위	9/2(수) 14: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31(월) 10:00	AI시대의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육성과 공급전략 국회 세 미나	박덕흠·유의동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8/31(월) 14:00	청정수소 구현을 위한 원전수소 역할과 위상 정책 세미나	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31(월) 14:00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 가?	박지혜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8/31(월) 15:00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오기형·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9/1(화) 10:00	AI 전환시대, 대한민국 온라인유통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김성원·허종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수) 10:00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이정현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9/2(수) 10:00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1차-전기요금 선 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박 정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9/3(목) 13:30	(MASGA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 축을 위한 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9/3(목) 14:00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3. 인력	주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3(목) 14:00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	김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9/4(금) 14:00	로봇 강국, 대한민국 Next Move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4(금) 14:00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이주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8/31(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1호(통권 제35호)	국회도서관	
	9/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7호(통권 제305호)		
	9/2(수)	「금주의 서평」 제2026-34호(통권 제793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6호(통권 제304호)	국회도서관	
	8/26(수)	「Data&Law」 2026-10호(통권 제48호)		
	8/26(수)	「금주의 서평」 2026-33호(통권 제79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24(월)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된 거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8/24(월)	지식재산권	UPC Long-Arm Jurisdiction 판례의 최근 동향 - 확장 일변도에서 “관할권의 존재”와 “행사”를 구별하는 정교화 단계로
8/25(화)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증명책임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립함과 아울러 API의 성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8/25(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8/26(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8/26(수)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수소법 시행령 개정
8/26(수)	금융	착오매매 정정신청 전에 이루어진 반대매도가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최초의 리딩케이스
8/26(수)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8월호
8/27(목)	건설/부동산	상가 신축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뒤집고 청구금액의 99%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8/27(목)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금전채권신탁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을 인정하여 선금금의 당연충당 및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8/27(목)	중국	중국 「생태환경법전」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8/28(금)	조세	Tax Intelligence 8월호
8/28(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8. 12. - 2026. 8. 25.)
8/28(금)	건설/부동산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체결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담보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